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8481 제안연월일: 2025. 2. .

제 출 자: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제출자)	(제출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국세기본법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2024.10.17.	소위회부,
(제4763호)			제1차~제6차 조세소위원회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국세기본법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2024.10.18.	소위회부,
(제4788호)			제1차~제6차 조세소위원회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 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의 적용 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하도 록 함(안 제24조제2항).
- 나. 조합원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39조).
- 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신설).
- 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 신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을 "상속인 (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으로 한다.
-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한다.
-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4조의3(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 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환급 및 감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 위원회를 둔다.
 -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 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의 승계) ① (생 략)	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	②
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	
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	
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u>상속</u>	<u>상속</u>
<u>인이 상속받은</u> 재산으로 보아	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
제1항을 적용한다.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u> 상속받은</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	

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 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 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 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 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 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u><신</u>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 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 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장 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

<u>야 한다.</u>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장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경 절차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 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 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